환경시설관리 시행세칙

제정 1999. 10. 01	개정 2011. 12. 01	개정 2015. 12. 28
개정 2002. 03. 01	개정 2015. 09. 21	개정 2018. 03. 12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의 환경안전과 관련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9.21., 2015.12.28.>

제2조(적용범위) 이 세칙은 본 대학의 오수, 폐기물, 유해물질 등 환경 관련 사항의 설비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15.9.21.>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. <개정 2015.9.21.>

제4조(주관부서 및 조직) ① 본 대학의 환경 및 관리시설의 총괄관리책임자는 총장, 환경시설관리책임자는 시설관리부서장 또는 자산관리부서장, 환경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부서팀장 또는 자산관리부서팀장 또는 담당자가 된다. <개정 2015.9.21., 2015.12.28., 2018.3.12.>

② 각 환경 요소 및 시설 관리의 실무책임은 실 사용부서장 또는 학과장이 지며, 관리 업무는 소속 부서의 팀장(없는 경우 담당자) 또는 학과조교가 담당한다. <신설 2015.9.21.> <개정 2015.12.28.>

제5조(환경관리시설의 관리) ① 오수정화시설은 관련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, 관리기준에 적법하게 운영하여야한다. <개정 2015.12.28.>

② <삭제 2015.9.21.>

③ 폐기물을 취급하는 자는 오염물질의 방치, 임의처분, 방류 등으로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거나,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폐기물 운반 시에는 비산, 낙하, 누수에 대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, 폐기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28.>

⑤ 폐기물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한 일반폐기물, 특정폐기물을 구분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⑥ 오수정화시설은 매 1년마다 1회 이상(50㎥~200㎥)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3.12.>

제6조(기술관리대행업체 준수사항) <삭제 2015.9.21.>

제6조의2조(환경기술관리 대행업체의 선정 및 위탁관리) 본 대학의 오수, 폐기물 등의 처리와 관리의 위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9.21.>

제7조(사고신고 및 조치) ① 오염물질의 임의방류, 매몰, 장기방치, 대량방출, 무단방류 등을 인지한 자는 시설관리부서 또는 자산관리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9.21., 2018.3.12.>

② 시설관리부서 또는 자산관리부서는 신고를 접수받은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즉각 조치하고,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9.21., 2018.3.12.>

③ 시설관리부서 또는 자산관리부서는 오염물질의 대량유출이나 장기배출로 인하여 주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. <개정 2015.9.21., 2018.3.12.>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